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온 정부
	배포일시	2019. 12. 12(목) 총 10대 (본문1, 붙임9)	
담당 부서 녹색도시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경호, 사무관 김의연, 주무관 이진우 · 정성구 • ☎ (044) 201-3749, 3751, 3753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.4배 증가

국토부, 장기미집행공원 11월말 기준 해소실적과 '20년 계획 발표
실효 공원의 25%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유에 전망
5월 대비 도시계획적관리는 2배 증가, 해제 예상 공원은 절반으로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5월28일 「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」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,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,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'19.12.13일(금) 발표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◆ 조성 계획 공원은 5월 93.5km² → 11월 134.9km²로 36.3km²(1.4배) 증가
 - * 지자체 직접 조성 : (5월) 67.8km² → (11월) 104.1km² / 민간공원 : 25.7km² → 30.8km²
- ◆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같은 기간 36.5km² → 82.1km²로 45.6km²(2.2배) 증가
- ◆ '20.7월 실효 대상 공원의 25%에 달하는 국·공유지(94.1km²)의 대부분(88%, 83km²)는 10년 간 실효 유예 예정
- ◆ 이에 따라,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km² → 11월 64km²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, 이들 부지는 공법적·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 등은 낮음

* 붙임 : 장기미집행공원 '19년 해소실적과 '20년 계획

장기미집행공원 '19년 해소실적과 '20년 계획

I. 제도개요 및 그간의 추진경위

1 공원일몰제 개요

- 공원일몰제란,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*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써, '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.

*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도로, 공원,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(46종)

-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·군·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,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(협의매수 곤란 시)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.

*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'20.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5년 동안('20~'25년)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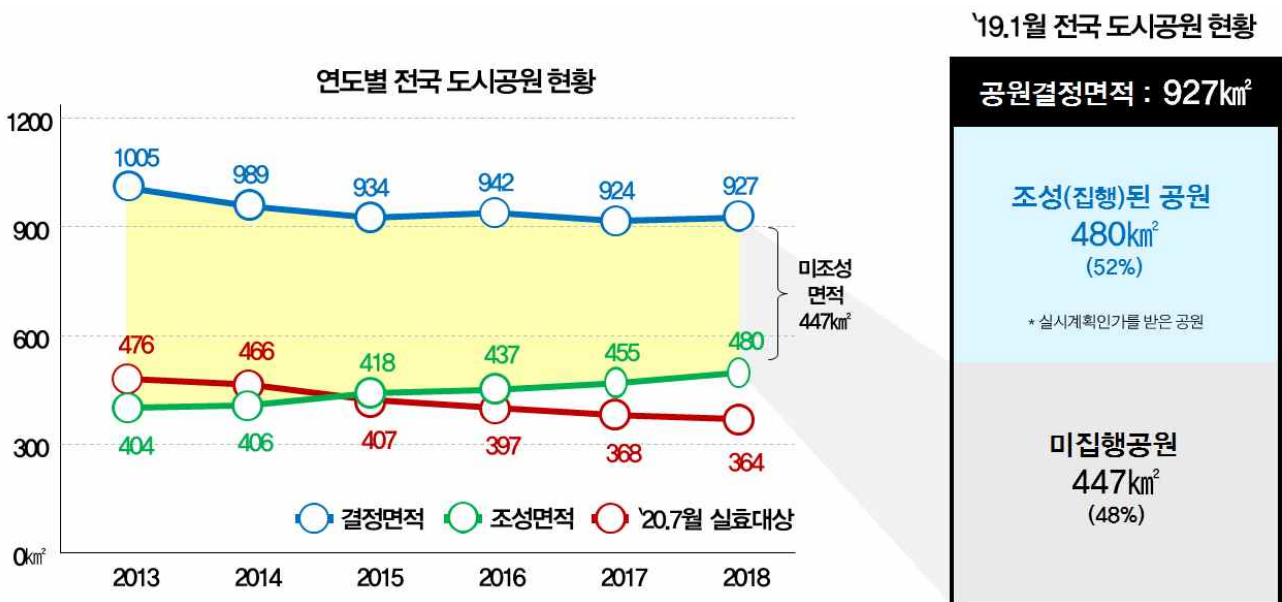
2 그간의 추진경위

- '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되었으며,
 -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('05), 도시자연공원구역('05)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('09) 등이 도입되었다.
- 문재인 정부에서는 '18.4월과 '19.5월 두 차례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「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」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.

Ⅱ.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및 해소계획

1 장기미집행공원 현황

- '19.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km²로서 480km²(52%)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, 나머지 447km²(48%)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km²(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)에 달한다.



- 전국 지자체는 '19.3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**공원으로 조성**하거나 **도시계획적 관리 수단***을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,

* 도시자연공원구역, 경관지구, 보전녹지, 용도지역 조정 등

- **공법적**(GB, 보전녹지 등) · **물리적**(표고, 경사도 등) **제한**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**해제**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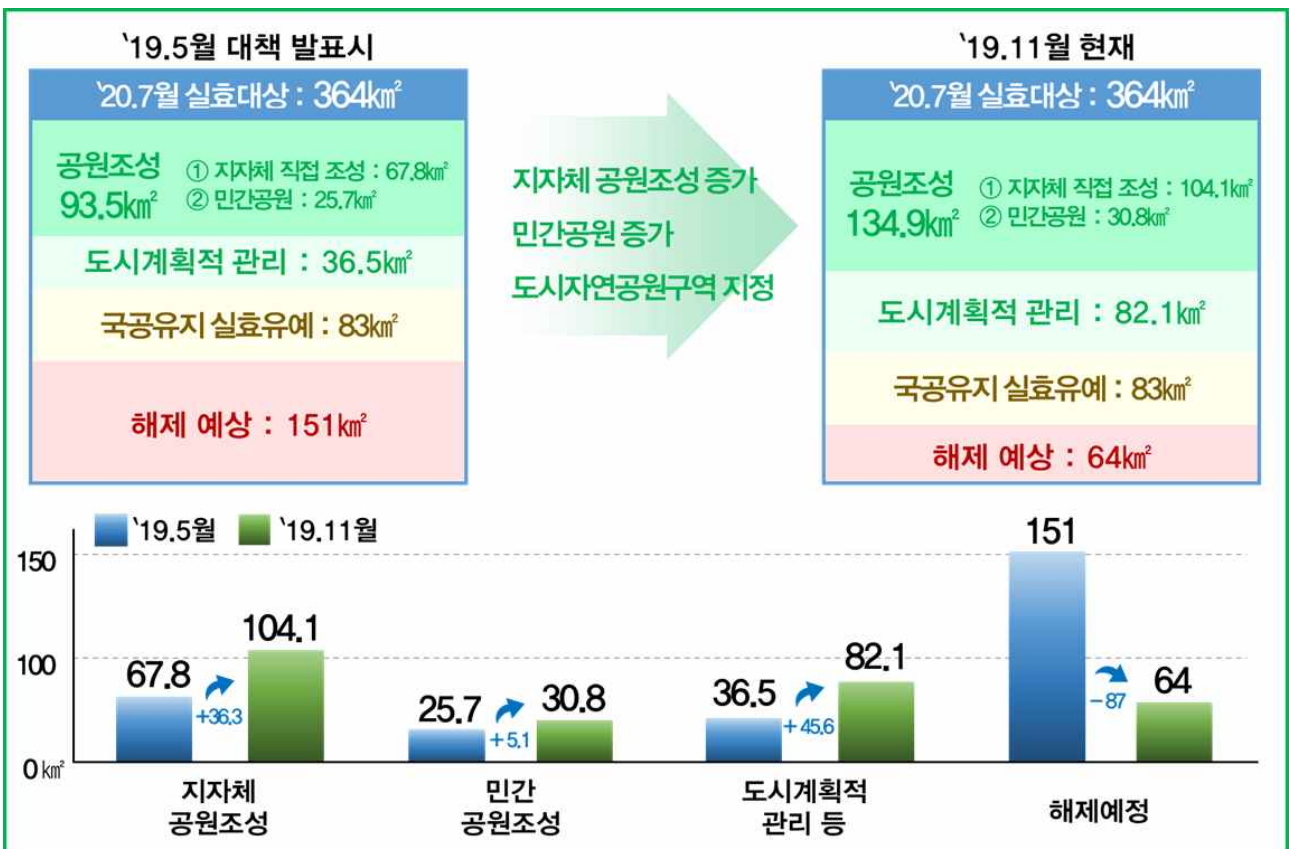
- 한편,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%(94km²)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**공원으로 조성**할 수 있도록 **10년간 실효**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**법안**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.

2

해소계획

-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, 조성 중인 공원은 93.5km² → 134.9km²로 1.4배 증가하였으며,
 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.8km² → 104.1km²로 36.3km², 민간공원은 25.7km² → 30.8km²로 5.1km² 증가하였다.
-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.5km²에서 82.1km²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이에 따라,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km²에서 64km²로 크게 감소하였다.
 -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, 공법적(GB, 보전녹지 등)·물리적(표고, 경사도 등)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, 해제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.

< 해소계획 변동 세부내용 >



Ⅲ. 공원 조성 세부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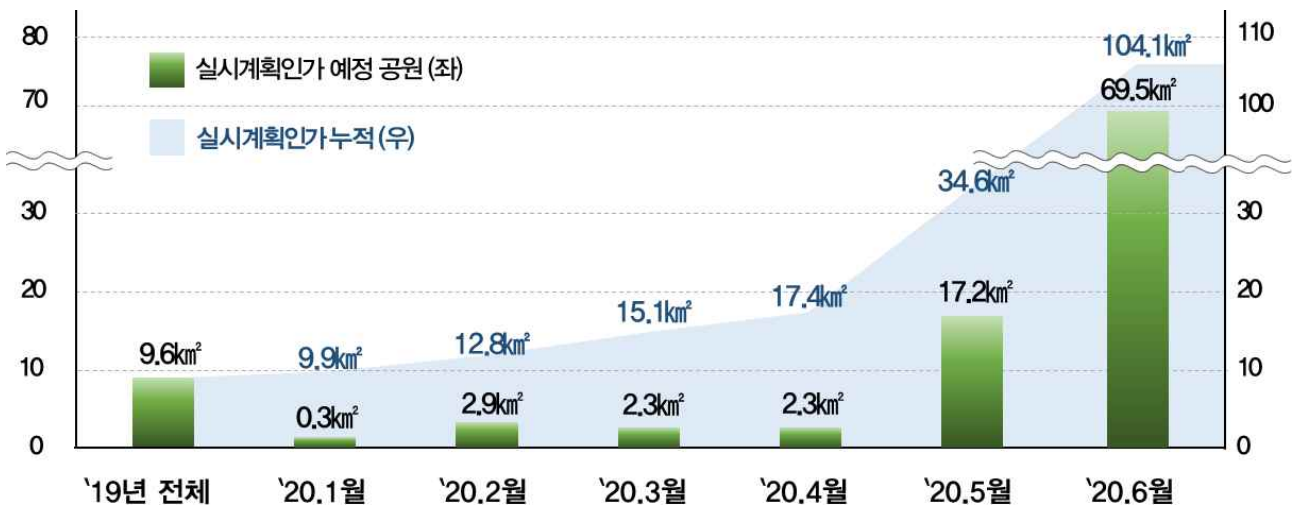
1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

① 실시계획인가

□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.1km²이다.

-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.6km²로서 전체 104.1km² 중 9.2%에 해당하며(12월 예정 포함),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 실시계획인가 실적 및 전망 >



② 예산 편성

-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'19~'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.4조원으로 조사되었으나,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'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.
- '21~'23년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한 계획으로서,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실제로 올해 3월 계획시 '20년 지방채 발행은 7,065억원이었으나, 올해 11월 기준으로 '20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2조 211억원으로 조사되었다. (3월 대비 1조3천억원 이상 증가)

<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자원투입 금액 >

연도	합계	'19년(확정)	'20년(확정)	'21년(잠정)	'22년(잠정)	'23년(잠정)
금액(억원)	74,460	21,656	30,527*	10,657	6,690	4,930

* '20년 예산안 기준, '20년 추경 편성 가능 / '24~'25년 계획은 현재 미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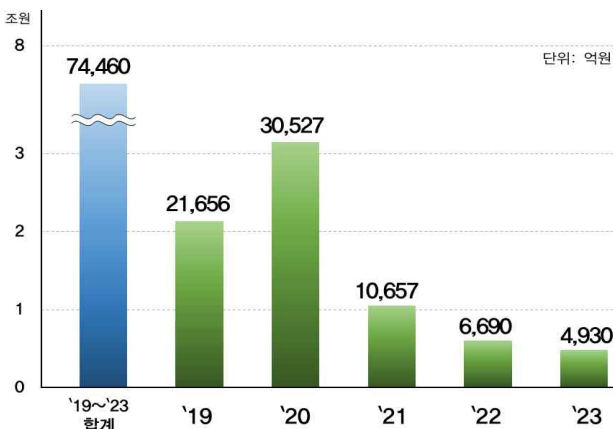
- 또한, 당초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후 '20.7월~'23.7월까지 3년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, '19.8월 「국토계획법」 개정으로 매입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'24~'25년에도 부지매입을 위한 자원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채원 투입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.

③ 부지 매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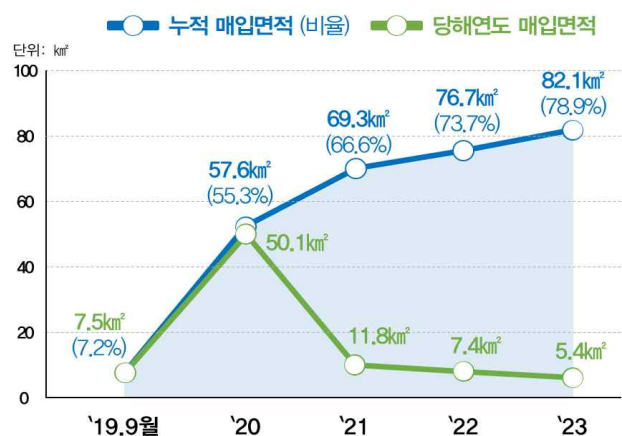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 중에 있으며, '19년 3분기까지 6,800억원을 투입하여 7.5km² (104.1km² 대비 7%)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러한 추세로 볼 때, 현재 계획된 금액(총 7.4조원)으로는 '23년까지 매입 대상 104.1km² 중 82.1km²(79%)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, 남은 22km²(21%)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.1조원으로 추정된다.

< 연차별 자원투입액 >



< 부지매입 전망 >



< 지자체 공원조성 사례 :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>
(공원조성 전)



(공원조성 후)



2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내 연계사업

□ 전국적으로 '20.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*은 총 78개소(30.8km²)로 조사되었다.

*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%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, 나머지 30%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

○ 국토교통부는 '20.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,

-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마련과 함께,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.

< 진행단계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>



- * 올해 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시작하지 못한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'20.7월 이전까지 사업절차 진행 기간이 부족할 전망

□ 한편,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(공급촉진지구 활용)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(2.3km²)하고, '20.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.

-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, 공공성이 높음*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.

- * 무주택자 우선 공급, 청년·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% 이하 공급 등

< LH 공원조성 사례 : 평택 배다리 공원 >

(공원조성 전)



(공원조성 후)



IV. 도시계획적 관리 및 국공유지

1 도시계획적 관리

□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국고지원 사업*을 활용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.1km²로 조사되었다.

* 도시재생 · GB 생활공원 ·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

○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· 지구 · 구역 변경 · 지정 등을 하는 것으로,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5월 36.5km²에서 11월 기준 82.1km²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.

- 서울시는 일부 매입 대상(2.3km²)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집행공원(52km²)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, 지난 10월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.

○ 한편,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*하고,

* 주차장, 체육시설, 도서관, 보건소, 수목장림, 노인복지시설 등

- 매수청구 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.

□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사업 예산확보와 함께 도시 ·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도시공원부지 중 국·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.
 - '20.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%(94km²)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, 이를 담은 「공원녹지법」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.
 - 다만,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가화 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(1.1km², 1.2%)와, 대부분이 해제 예정인 사유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어 실효를 유예할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(10.3km², 11%)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'20.7월 실효될 전망이다.
-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“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,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**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**”며 “**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**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**”고 밝혔다.**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(☎ 044-201-37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